



2019.11.21(목) - 11.24 (일)
KINTEX 1전시장 1HALL



킨텍스 유일의 전문 유아교육박람회인 "KIDS & EDU EXPO" 에서
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제시해보세요!

New Market

유아~초등저학년을
대상으로 수도권 및 경기,
인천 지역을 타겟팅한
신규 시장 개척
기회 제공



B2B2C 전시회

학부모 및 바이어 대상
신제품 홍보와
1:1계약상담으로
B2B와 B2C시장을
모두 아우르는 전시회



특화전시

기존 교육전과
차별화된 구성으로
누리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춰
새로운 교육 트렌드를
담은 전시회



전시품목



교구/문구/완구
교구/완구/블록, 에듀테인먼트(기능성) 게임,
보드게임, 승용완구, 학용품류 등



외국어교육
어학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, 조기유학 및 연수,
영어 캠프 등



교재/교육프로그램
가베, 한글, 수학, 과학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,
창의/인성 교육, 방송/영상 교육프로그램 등



예체능교육
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, 방과후 콘텐츠,
연극/뮤지컬 등



도서/출판
어린이 그림책, 전집, 단행본 아동도서,
출판유통 등



원기관 용품/서비스
강사파견, 특별활동 프로그램, 시설 및 용품,
실내/외 놀이시설, 교수자료



스마트교육/콘텐츠
교육용 어플리케이션, VR/AR, 온라인/인공지능형
교육 콘텐츠, 기타 교육용 IT/디지털 기기 등



키즈헬스/홈리빙/용품서비스
유아간식, 의료서비스, 화장품, 의류/액세서리, 유아동 가구,
침구류, 인테리어 소품, 가전 제품, 금융 및 기타 서비스

전시개요

- 전 시 명 | 제26회 국제유아교육박람회
(KIDS & EDU EXPO 2019)
- 기 간 | 2019. 11. 21(목) ~ 11. 24(일), 4일간
- 장 소 | KINTEX 제 1전시장 1홀
- 규 모 | 150개사 400부스
- 부 대 행 사 | 영재교육 CLASS, Program Market, 경진대회, 아동교육 컨퍼런스 등
- 주 최 | Yuarim
- 동 시 개 최 | 제33회 맘앤베이비엑스포



※ Program Market ?



- 홍보 부스(개별) + 수업 시연 공간(공용) 지원
- 무형의 교육 콘텐츠를 시연하여, 체험마케팅을 통한 학부모 및 교육기관등과의 실질적인 상담계약 도모
- 자사 수업 시연 외 4일간 현장 홍보/상담부스 운영 필수 (신청업체 중 5~6개사 선정 후 프로그램 진행 일정 협의)

참가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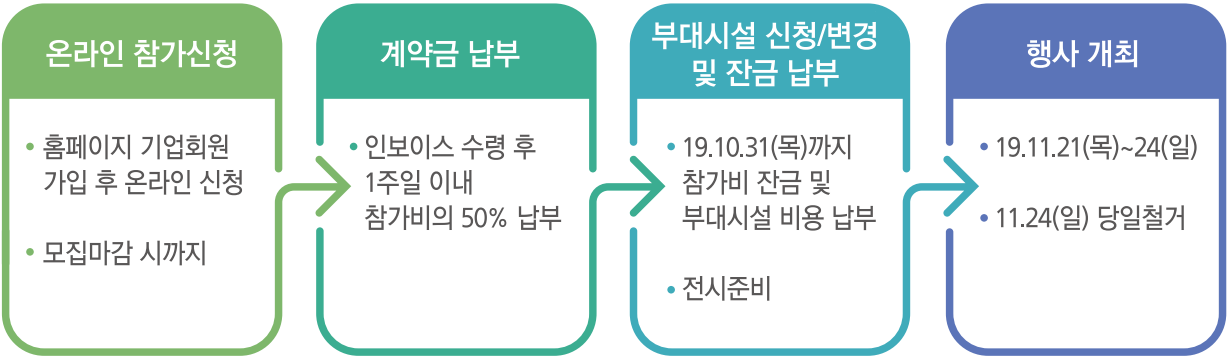
[VAT 별도]

구 분	비 용	부 스	제공내역
기본부스	2,500,000원	3m X 3m	벽체, 파이텍스, 상호간판, 조명, 전기1Kw, 2구 콘센트 1개, 안내데스크 및 의자 1개 (업체당 1조)
독립부스	2,200,000원	3m X 3m	전시면적만 제공 ※부대시설(전기, 인터넷 등) 필요 시 별도 신청 및 장치공사 시 킨텍스 등록업체만 선정/진행 가능
Program Market	700,000원	3m X 2m	기본부스와 동일 + 프로그램 시연공간(공용)제공 ※참가 가능 요건은 상단 설명 참조

참가접수 및 광고/협찬 문의

(주)유아림 전시팀 T. 02-2236-2172 E. kidsnedu@yuarim.com

전시 참가 방법



- 참가비 납입처 - 국민은행 839-01-0085-656 (주) 유아림 ※입금시 업체명 기재
- 부스위치 선정 - 참가품목, 참가규모, 참가비 납입 순서 등을 기준으로 하며, 전시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주최자 일괄 배정

마케팅 프로모션



박람회 참가규정

2019년 11월 21일(목) ~ 11월 24일(일)

KINTEX

제 1 조 용어의 정의

- 「전시회」라 함은 “국제 유아교육박람회(KIDS&EDU EXPO)”를 의미한다.
- 「전시자」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기업, 공공단체, 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.
- 「주최자」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구로 4길 39, 4층 (신당동, 청운빌딩) 소재 「(주)유아림」을 말한다.

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

- 「전시자」가 “참가신청서”를 주최자에게 제출하고, 이와 동시에 현금으로 참가비의 50%를 납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.
- 잔금 50%(부가세 포함)는 2019년 10월 31일(목)까지 현금으로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
「전시자」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「주최자」는 참가 신청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무국은 기납입한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.
-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.

제 3 조 전시품 규정

- 「전시자」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「주최자」는 이를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이 경우 「주최자」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며, 「전시자」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「전시자」는 전시회 기간 중에 전시, 시연, 판매된 전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- 전시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문제 등으로 인하여 「주최자」에 보상을 요구할 시, 「전시자」는 보상요청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.
- 「전시자」는 「주최자」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에 타사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다.

제 4 조 부스의 배정

- 「주최자」는 신청 및 계약금 납입 순서, 참가규모, 전시품목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「전시자」의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.
- 「전시자」는 전시부스의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기 배정된 전시면적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「주최자」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효과, 안전 등을 고려,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「전시자」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「전시자」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5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

「주최자」가 국가 위기 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나, 천재지변 및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 등으로 「전시회」가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할 경우 「전시자」는 「주최자」에게 참가비 등 참가신청과 관련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6 조 참가취소 및 해약

본 계약 체결 후 「전시자」가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「전시자」는 다음에 정하는 해약금액을 「주최자」에 지불하여야 한다.

참가취소 시기	해약 금액
전시개최일 91 일 이전	참가비의 50%
전시개최일 31 일 전부터 90 일 전까지	참가비의 80%
전시개최일 30 일 이내	참가비의 100%

제 7 조 보험, 보안 및 방화 안전

- 「주최자」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.
- 모든 전시품목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「전시자」에게 있으며 「주최자」는 이의 분실, 파손,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.
- 「전시자」는 전시시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「전시자」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,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타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반드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.
- 「주최자」는 필요에 따라 「전시자」에게 화재 방지와 안전에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8 조 전시장 및 전시부스 관리

-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- 「전시자」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「전시자」는 계약한 부스면적을 벗어나 전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또한 전시품목의 시연은 인체, 재물에 대한 안전과 타 참가업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연하여야 하며, 「주최자」는 전시장 안전을 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「주최자」는 박람회 운영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정한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9 조 설치철거 및 원상 복구

- 설치 및 철거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설치지면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- 「전시자」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품목 반출기한 내에 완전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. 원상 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「주최자」가 임의로 처분하고, 이에 소요된 경비는 「전시자」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10 조 보충규정

- 「주최자」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- 「전시자」는 「주최자」 및 (주)킨텍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분쟁해결

본 참가규정과 관련하여 「주최자」와 「전시자」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를 통해 관할 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한다. 관할 법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